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로대장 작성 주체에 도로대장 작성 업무 대행자 추가 및 도로대장 보관 방법 개정(안 제24조 개정)
- 나. 터널·지하차도·방음시설의 도로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9. ~ 2025. 1. 20.)
3) 행정규제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로관리청은”을 “도로관리청과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로대장을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 중 “도로대장(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도로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2호 중 2-2. 터널 제원, 2-4. 지하차도 제원 및 제6호 중 6-1. 방음시설 및 가로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2. 터널 제원

(20쪽 중 제5쪽)

①관리번호							②관리기관				
③도로의 종류		④노 선 명				⑤노 선 번 호				⑥구 간	
⑦터 널							⑧시설물 종별				
위치	⑨시 점						⑩소 재 지				
	⑪종 점						⑫상 태 등 급				⑬진 단 결 과
구 분		⑭연 장	폭 원			⑮높 이	⑯통 행 제 한 높 이	⑰형 상	⑱차로 수	⑳공 법	
			㉑계	㉒차 도	㉓보 도						
㉔상 행											
㉕하 행											
구 분		㉖바 닥	㉗천 정	㉘측 벽		㉙종단경사					
㉚두 께						㉛곡선반경					
㉜재 질						㉝배수시설					
구 분		㉞소화설비	㉟경보설비	㊱피난대피설비		㊲소화활동설비	㊳비상전원설비	㊴조명설비	㊵그밖의 설비		
㊶종 류											
㊷수 량											
㊸공사기간			㊹착 공 일				㊺준공일				
㊻시 행 자			㊼시 공 자			㊽설 계 자		㊾감 리 자			
㊿총사업비			㉑설 계 비			㉒공 사 비		㉓감 리 비			
비 고											

2-4. 지하차도 제원

(20쪽 중 제7쪽)

①관 리 번 호							②관 리 기 관	
③도 로 의 종 류		④노 선 명		⑤노 선 번 호		⑥구 간		
⑦지 하 차 도 명					⑧시 설 물 종 별			
위 치	⑨시 점				⑩소 재 지			
	⑪종 점				⑫상 태 등 급		⑬진 단 결 과	
⑭연 장		⑮규 격		⑯폭 원(차도)		⑰폭 원(보도)		
⑱차로 수 (상행)		⑲차로 수 (하행)		⑳중 단 경 사		㉑곡 선 반 경		
옹 벽		마감재		㉒통행제한높이				
㉓높 이	㉔연 장	㉕천 정	㉖벽 체	㉗배수시설				
구 분		㉘소화설비	㉙경보설비	㉚피난대피설비	㉛소화활동설비	㉜비상전원설비	㉝조명설비	
㉞종 류								
㉞수 량								
㉞공사기간		㉞착 공 일		㉞준 공 일				
㉞시 행 자		㉞시 공 자		㉞설 계 자		㉞감 리 자		
㉞총사업비		㉞설 계 비		㉞공 사 비		㉞감 리 비		
비 고								

6. 부대시설 조서

(20쪽 중 제16쪽)

6-1. 방음시설 및 가로수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노선번호		④구간		⑤관리기관		
⑥관리번호	위치			⑩구분	⑪종류	⑫재질	⑬높이/수량	⑭설치/식재일		
	⑦시점	⑧종점	⑨방향							
구 분		⑮소화설비		⑯경보설비		⑰피난대피설비		⑱소화활동설비		⑲비상전원설비
⑳종 류										
㉑수 량										
비고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도로대장) ① <u>도로관리청</u> 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 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 여야 한다.	제24조(도로대장) ① <u>도로관리청</u> 과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 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 행하는 자는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u> <u>구분에 따라 도로대장을 보관해</u> <u>야 한다.</u>	④ <u>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전</u> <u>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u> <u>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6</u> <u>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 처</u> <u>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u> <u>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u> <u>따라 도로대장을 보관할 수 있</u> <u>다.</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u>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정보</u> <u>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u> <u>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구</u> <u>히 보존하여야 한다.</u>	⑤ ----- <u>도로대장</u> ----- ----- ----- -----.